의안번호	제 83 호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의결사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문순규 · 김경수 · 김묘정 · 김미나 · 김상현 · 김영록 · 김우진 · 김헌일 · 박해정 · 심영석 · 오은옥 · 이우완 · 이천수 · 진형익 · 황점복 의원
발의연월일	2022. 10. 19.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3

발의연월일 : 2022. 10. 19.

발 의 자 : 문순규·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영록 김우진·김헌일·박해정·심영석·오은옥·이우완 이천수·진형익·황점복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각양각색의 위반 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됨.

○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그 처분의 양정을 심의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예비선정)배심원단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7조)

라. 배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배심원단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바. 배심원의 제척과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심제 대상) 배심제의 대상은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예비배심원단) ① 시장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실·국·소장(구청의 경우에는 대민기획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

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배심제 운영 안내)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배심제의 신청) 처분당사자는 배심제를 원할 경우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심제 운영 안내에 정한 기한까지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배심원단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

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배심원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

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문순규 의원)**

1. 의회사무국-6544(2022.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정 개요**

조 례 안	부 서 검 토 의 견	발 의 자
창 원 시 행정처분배심제 운 영 조 례 안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본 조례는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 및 불이익 행정처분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심원이 처분의 양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 배심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지연 수단으로서의 남용·악용의 가능성 및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등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나,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	문 순 규 의 원

붙임 부서검토보고서 등 각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이고은** 의회협력담당 **정성림** 정책기획관 **홍순영** 전결 2022. 9. 5.

협조자 기획담당 **박찬익**

시행 정책기획관-8788 (2022. 9. 5.) 접수 의회사무국-8105 (2022. 9. 5.)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goni07@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문순규 시의원 발의 제정조례(안) 검토 보고

Ⅰ 조례제정 개요

1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 **문순규 의원**(창원시의회 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심원이 그 양정을 심의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배심) 처분당자사의 신청·의견체출 +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예비선정 배심원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예비선정배심원) 각 분야 전문가, 관련 분야 경력자 등 2년 임기로 30명 이내 위촉
- (배심원의 구성) 공무원배심원 + 선정배심원(예비선정배심원 중 3 ~ 5명 선정)

○ **심의 및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배심제 심의 결과의 반영 여부는 처분부서 장의 재량

○ **제척, 비밀유지 의무, 수당, 행정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Ⅱ 부서검토 내용

1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타 지자체 제정 현황(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 기준)

연번	법령명	제정일	결과 반영	운영실태
1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09.03.26.	최대한 반영	미운영
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10.01.11.	반영	미운영
3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09.03.23.	〃	연간 1 ~2건
4	경상북도 행정처분 배심원제 운영규정(예규)	'08.02.28.(최초)	반영할 수 있음	연간 1 ~2건

※ 경상북도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시 의견청취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공청회 등과 함께 행정처분배심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대부분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선택

3 「행정처분배심제」 검토 의견

< 순기능 >

○ 처분당사자의 **권리 구제 수단 확장**

- 행정심판·소송에 비해 시간·비용 절감 + 시민의 권리구제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힘

○ 행정처분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 시민의 심의 요청 기회 마련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의 의견 수렴

< 문제점 >

○ 행정처분 지연 수단으로서 **남용·악용 가능성**

○ 제도 운영의 **낮은 실효성**

- 행정절차법상 청문과 기능 중복 + 타 지자체 유사 제도 분석 결과 저조한 운영실태

4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붙임1) 검토내용 및 수정안(대조표) 참조

< 조문추가 >

○ (적용대상 명확화) 사전통지 대상 행정처분 ⇨ **제도 운영상 혼란 방지**

○ (결정기한 명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 조문수정 >

○ (제척사유 강화) 처분부서 소속 공무원 배제 ⇨ **심의의 공정성 확보**

○ (시행일자 변경) 공포시 → 2023. 1. 1. ⇨ **규칙제정 등 시행준비**

Ⅲ 종합의견

○ 제도 남용·악용의 우려,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이 예상되는 반면,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그 의의가 높음

○ 입법형식에 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문 추가·수정할 필요 있음

붙임 1. 검토내용 및 수정안(대조표) 1부.
2. 의원 발의 조례안 1부.
3. 부서 검토 조례안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1 검토내용 및 수정안(대조표)

의원발의안	검토내용 및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행정처분”이란 창원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1.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이 선정·지정한 자를 말한다.	<삭 제> **(제5조·제6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므로 중복 삭제)**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2. ---------- 사무---------- 소관부서----------.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	3. --------- 배심원단(예비배

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임부서명]을 말한다.	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선정·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처분 이후가 아닌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배심제 적용함을 명시)**
제3조(대상) 창원시 또는 구청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에 대한 배심을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배심제 대상) 배심제의 대상은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 ---------- ---- ----, ---- ---- ------- 배심제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원발의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 병합)**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9조로 분리>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 요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제1항으로 이동>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로 이동>	
② 배심원장은 처분부서의 국·실·소장이 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0인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이나 주요 시책사업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제1항으로 이동>	
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으로 이동>	
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 제2항으로 이동>	

<종전 제6조 제1항>	제5조(예비배심원단) ① 시장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 ----- ---- , ----- , ---- , ----- (------- ---- ----) ---- ----- ----- ---- ---- 2. ------- 사안과 ------- ----- ------ ------ ---- 전직 공무원 3. -- ---- --------- ----- --- ------ --------- -- ---- 시장이 인정하는 ----
<종전 제6조 제2항>	② 예비배심원-- ----- ---- --- 한다. ----,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 -------- ----.
<종전 제5조>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명-- ------ -명 ---- -명 이내-- -------- --------. ② 단장은 --------- --·--·----(구청의 경우에는 대민기획관을 말한다)이 ----.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

	- ---------- ----하며, ---------- ---- ---- -----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 ---------- ----. ----, ---------- ----- ---- -------- ---- --- ------ -- ----. **(처분부서 소속 공무원은 배제함으로써 배심제의 공정성 도모)**
<신 설>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 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 배심원단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신 설>	제8조(배심제 운영 안내)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명시)**
제7조(심의 등) ① 배심의 심의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삭 제> **(제4조 배심제 대상과 내용 중복)**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3항으로 이동>
제8조(의견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배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로 이동>
제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제12조로 이동>
<신 설>	

<신 설> 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배심제의 신청) 처분당사자는 배심제를 원할 경우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심제 운영 안내에 정한 기한까지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명시)**
<종전 제4조 제2항>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 ---- ---- ---- ------ ---- --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종전 제6조 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 ---- ------ ---- ----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 -명 --- -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 제7조 제2항>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 - --- 출석과 출석배심원 --- - ----- ------ 결정한다.
<신 설>	④ 배심원단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기한 명시)**
<종전 제8조>	제11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 ---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을 ----------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 -- ----.
<종전 제9조>	제12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 **(법제처 제척사유 입법례 인용하여 제척사유를 확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 배심원제----------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 <삭 제> **(준용하는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례를 준용하라고 명시되어있어, 법제처 입법형식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11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창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 1. 1.---------.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 필요)**

붙임2 **부서 검토 조례안**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심제 대상) 배심제의 대상은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예비배심원단) ① 시장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실·국·소장(구청의 경우에는 대민기획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배심제 운영 안내)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배심제의 신청) 처분당사자는 배심제를 원할 경우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심제 운영 안내에 정한 기한까지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배심원단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배심원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붙임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Ⅰ.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Ⅱ.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Ⅲ. 미첨부 사유

○ 행정처분배심제 운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예상

Ⅳ.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홍 순 영**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문순규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 8. 5.(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문순규 의원	제11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붙임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전혜림** 입법예산담당 **유정호**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2. 7. 22. **박진열**

협조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영현**

시행 의회사무국-6544 (2022. 7. 22.)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5 팩스번호 055-225-4743 / jeonhr1@korea.kr / 비공개(5)

붙 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
발 의 자 : 문순규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각양각색의 위반 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됨

○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그 처분의 양정을 심의 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예비선정)배심원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심의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제척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창원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이 선정·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임부서명]을 말한다.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선정·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창원시 또는 구청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에 대한 배심을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 한다. 다

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 요청을 해야 한다.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처분부서의 국·실·소장이 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0인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이나 주요 시책사업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심의 등) ① 배심의 심의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배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창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